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4. 9. 3.>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30일(발급)/10일(재발급)	
신청인	성명 (한글)	사진 (3.5×4.5cm)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메일		
	재발급 신청 사유	※ 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감면신청 및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제3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목재문화진흥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규 발급의 경우: 사진(3.5cm×4.5cm 여권용) 2장 2. 재발급의 경우 가.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사진(3.5cm×4.5cm 여권용) 2장	수수료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른 금액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른 금액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